

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모집 공고

2024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4. 4. 29.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1.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
- (사업목적)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용 완속충전시설 구축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
- (사업예산) 540억원
- (신청기간) 2024.3.6.(수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(신청방법) 신청자가 하는 직접신청과 사업수행기관이 하는 대행신청 방법이 있으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 포털에서 신청
- (지원제품) 사업수행기관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*에 등록된 충전기
*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→ 구매 및 지원 → 완속충전기 제품안내

2. 보조금 지원대상

- 공동주택, 사업장,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·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
※ 공용충전시설이란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

3. 보조금 지원기준

○ (지원수량) 2024년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기준

구 분	설치가능 수량
1) 해당 장소에 기 설치된 충전기가 없는 경우	주차면수 × 5%
2) 해당 장소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 설치된 충전기가 있는 경우	설치가능 수량 - 기 설치된 충전기 수

- ※ 설치가능 수량은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처리한다.
- ※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충전 케이블 수를 곱한 수만큼, 과금형콘센트는 4를 곱한 수만큼 지원 가능하다.
- ※ 기 설치된 급속충전기, 완속충전기는 1기로 산정하고, 키오스크 충전기는 2기당 1기,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충전 케이블 수량과 무관하게 1기, 과금형콘센트는 4기당 1기로 산정한다. 단, 기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자가 소유자 또는 특정 차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충전기는 기 설치 수량에서 제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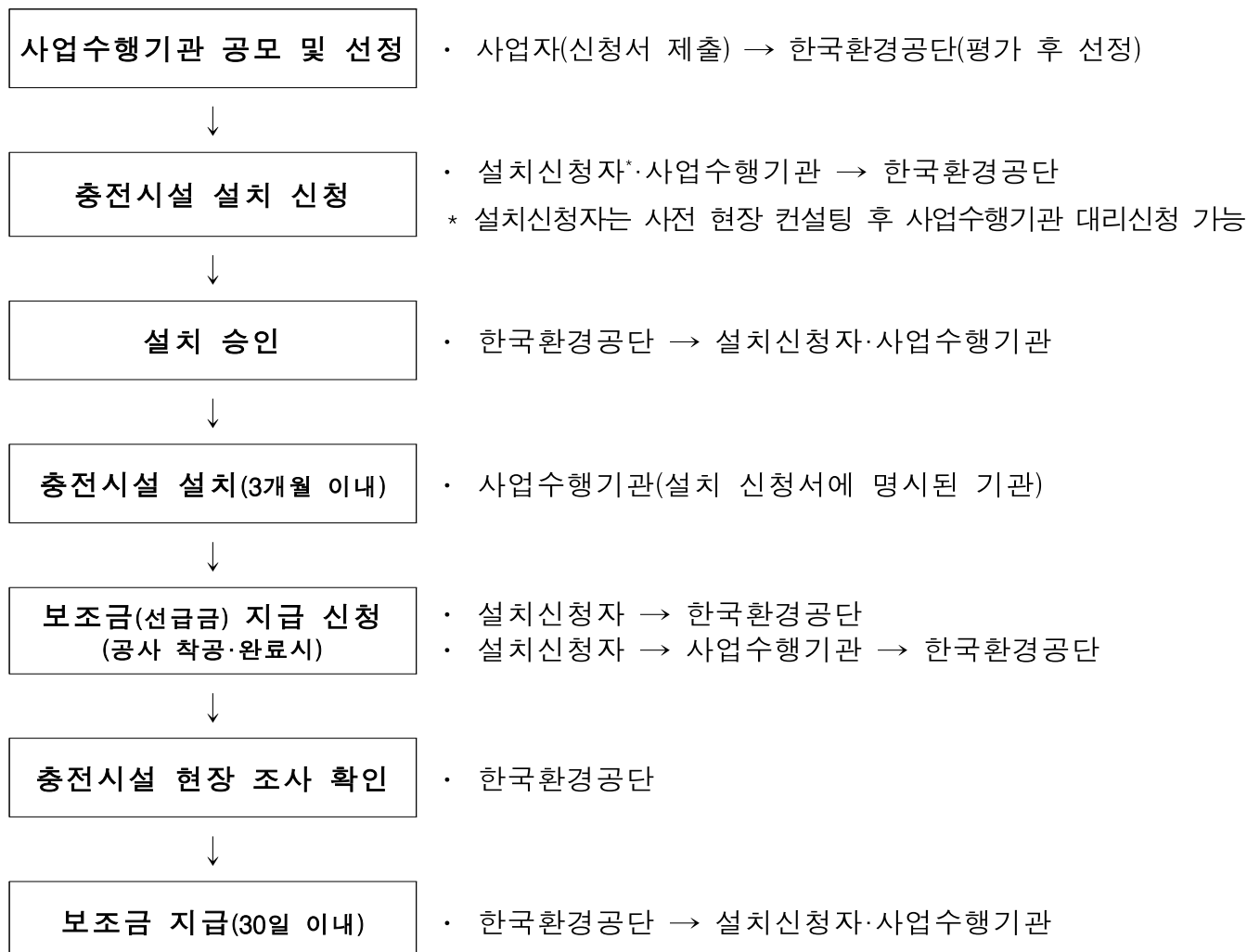
○ (보조금 지원단가)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

<2024년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>

충전기 구분	보조금 지원단가(만원)
① 30kW 이상 충전기	500(1기), 400(2기), 350(3기 이상)
② 11kW 이상 충전기	160(1기), 140(2기~5기), 120(6기 이상)
③ 7kW 이상 충전기	140(1기), 120(2기~5기), 100(6기 이상)
④ 3kW 이상 충전기	50(1기), 45(2기~5기), 40(6기 이상)
⑤ 전력분배형 충전기	①~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10만원씩 추가 지원
⑥ 키오스크 충전기(7kW)	140(2기)
과금형콘센트	35(1기)
화재예방형 충전기	충전기(①~④) 보조금 지원단가에 “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장치 비용” 추가 지원(추후 공지)

- ※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,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 등이 부담함
- ※ 키오스크 형식의 충전기(케이블이 있는 충전기)는 기본 2기(보조금 140만원)를 지원하며, 1기 추가 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함
- ※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본체에 추가되는 케이블 1기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며, 동시에 모든 케이블에서 충전시 합산한 총 용량에 해당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(단, 동시 충전시 최소 충전용량은 3kW를 초과할 것)
- ※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 시에도 지원하며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. 충전정보의 교환,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. 또한,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
- ※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각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에 “배터리 정보수집 및 충전 제어를 위한 장치 비용”을 추가하여 지원

4. 보조사업 추진절차



5. 충전시설 설치신청

○ (지원제품)

-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 접속 → 상단 메뉴의 [구매 및 지원] 선택
→ [완속충전기 제품안내] 선택 후 사업수행기관과 제품 확인

-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현장 컨설팅 진행 후 신청서 작성·접수

※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 기관에서 설치신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

○ (신청서류)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[별지 제5호 서식] 등

※ 제출서류는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(P.10) 참고

○ (신청방법)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 →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시스템

6. 유의사항

○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신청 및 지급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충전기 사양이 다를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임

○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신청서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되어 승인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충전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여야 함

○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되지 않도록 신청자(설치 승낙자)와 사전 현장 컨설팅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

○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 시 지침 [별표3, 4]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

○ (문의처)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TF(1899-3638)